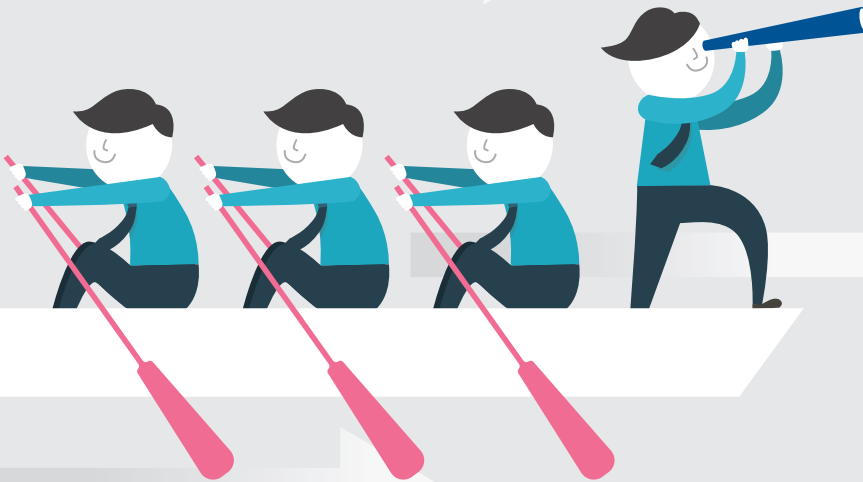


2017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7. 11.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및 운영요건 완화 특허심사기획과	04
02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무료 제공 정보관리과	06
03	IP 가치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지정 산업재산활용과	08
0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심판·소송 지원 강화 산업재산보호지원과	10
05	온라인 영상 심사관 면담제도 도입 특허심사제도과	12

06	인터넷 전자출원 범위 확대 및 편의 제고 정보시스템과	14
07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ARS 결제 서비스 제공 정보고객정책과	16
08	디자인 출원 전 본인 공개에 따른 거절 부담 경감 디자인심사정책과	18
09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 등록과	20
10	IP 분쟁 조기해결을 위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기간 연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	22
11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디자인심사정책과	24
12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상표심사정책과	26
13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산업재산정책과	28
14	전산장애 발생 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정보고객정책과	30
15	심결문 발송 안내 메시지 서비스 제공 심판정책과	32

민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및 운영요건 완화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042-481-8691)

기존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지정된 3개 조사기관에만 선행기술조사를 맡겨야 했는데, 앞으로는 등록된 조사기관이면 아무 곳이나 선행기술조사를 맡겨도 되나요?



A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가 도입되어 전문기관 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기관 중 일정 품질 이상인 기관만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제 및 운영요건 제한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

관련규정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관리에 관한 고시

개선 내용

개선 전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제
* 3개 지정 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웹스, 아이피솔루션)
-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가능건수 제한
- 조사팀 인원 제한(30명 이내)

개선 후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 특허법인,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등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확대
- 신규·부실 조사원에 대해서만 1인당 연간 조사 가능건수 제한
- 조사팀의 인원제한 폐지

기대 효과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자율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품질 제고 및 대국민 특허심사 서비스 품질 향상

특허권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A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허 출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 A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맡겨서 알아보고 싶지만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비용 문제 등으로 조사 의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 품질 이상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믿을 만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라 특허 출원 여부 및 특허 출원된 발명의 보정 방향도 결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권리범위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무료 제공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39)

특허 검색, 분석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료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은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gift) 제도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plus.kipri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분기별로 심사를 통해
무료제공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예비 및 초기 창업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에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지식재산(IP) 데이터의 구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 IP 정보 기반 창업 시, 특허·실용신안 공보의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약 2,574만원 필요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제40조의2, 동법 제40조의4 및 지식재산(IP) 데이터 기프트 제도
운영 지침

개선 내용

개선 전



- 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우수팀에 포상의 일환으로 IP 데이터를 1년간 무료제공

개선 후



-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IP 정보 분야 상품 개발에 필요한 IP 데이터를 최대 3년까지 무료제공
 - (창업형) 예비 창업자 대상, 1년간 무료제공 (창업시 성장형과 연계)
 - (성장형)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2년간 무료제공

기대 효과

- 지식재산(IP) 데이터 무료 제공 대상 및 기간 확대로 비용부담 완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촉진

- 기업에서 지식재산 검색, 분석, 평가 등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데이터가 필요하나 유료로 구매 중
 - 특히,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는 특허 공보 등의 초기 데이터 구축비용(특허·실용신안 기준 약 26백만원)이 큰 부담으로 작용
- 예비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까지 무료제공 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

IP 가치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지정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특허청이 지정한 IP 가치평가기관에
현물출자, 세무 등에 필요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특허청이 지정한 IP 가치평가기관도
법원, 국세청 등이 인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인지요?



A 지난 7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특허청이 지정한
IP 가치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기관(법적 명칭: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허청이 지정한 IP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받아보신 가치평가보고서는 현물출자,
세무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IP 가치평가기관은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니므로, 평가결과가 법원·국세청 등에서 인정받지 못함

관련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 IP 가치평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함

개선 후



-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 기관에 특허청을 추가
- 특허청이 IP 가치평가기관을 공인된 감정기관인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기대 효과

- IP 가치평가기관을 통한 평가결과가 법원 및 국세청 공식자료로 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

A사의 대표는 자신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IP를 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재무개선, 추가 금융조달 등을 계획하고 있다. A사는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 평가기관을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IP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야 현물출자에 활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공인된 감정기관인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사의 기술특성에 맞는 평가기관을 통해 IP 가치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변리사의 심판·소송 지원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허청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3일부터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의 권리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익변리사가 무료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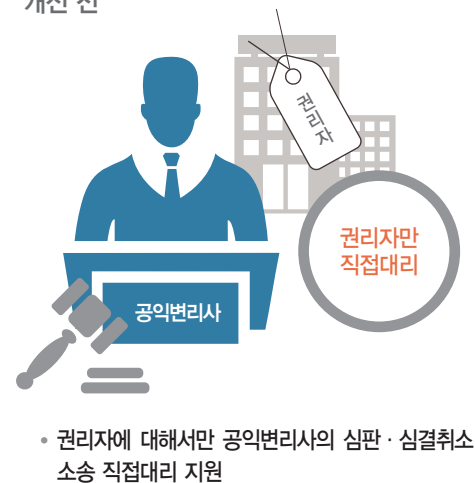
상표브로커 등 권리자의 권리남용 발생 시 사회적 약자인 비권리자의 경우
공익변리사의 직접대리 지원 불가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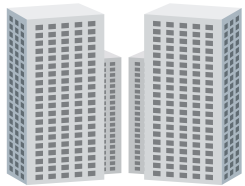
- 권리자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공익변리사의 대리업무 범위를 사회적 약자인 비권리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강화

소기업 A사는 상표권자 B사로부터 동일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침해경고 및 민·형사상 피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권리범위(소극적) 확인심판 및 심결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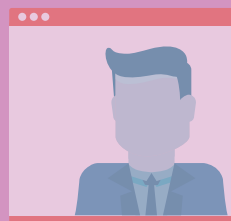
온라인 영상 심사관 면담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9)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 출원인입니다.
제가 출원한 발명에 대해 심사관과
면담을 하고 싶은데
반드시 특허청 본청(대전 소재)에
방문해야 하나요?



A 대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특허(실용신안 포함) 심사관과의
면담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17년 6월부터
전국 주요 장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상담이 가능한 영상 면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출원인이 심사관 면담을 원할 경우 특허청(대전)에 방문해야 하고, 대면 면담의
증가에 따라 출원인의 부담이 가중됨

개선 내용

개선 전



- 심사관 면담을 위해 특허청 본청(대전)에 직접 방문

개선 후



- 전국 주요거점에서 심사관(특허·실용)과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영상 면담장소: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8개 지역지식 재산센터(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기대 효과

- 출원인(대리인)의 심사관과의 대면면담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 경감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 출원인 A씨는 특허 출원 후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심사관에게 설명하고 특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심사관 면담을 위해 대전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간적·비용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시행된 특허청의 온라인 영상면담 서비스를 통해 대전에 방문하지 않고도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었고, 특허출원서·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영상으로 심사관과 함께 보고 메모도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만족스런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인터넷 전자출원 범위 확대 및 편의 제고

특허청 정보시스템과 (042-481-5159)

전자출원은 Internet Explorer만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PCT 출원을 위해 반드시
또다른 SW를 설치해야 하나요?
또 상용워드 문서로
디자인 출원은 안 되나요?



A ActiveX를 제거하여 Chrome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여도 전자출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ePCT' 웹페이지를 통해
PCT 서식을 작성할 수 있어
기존의 SW(PCT-SAFE)는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용워드 문서 출원을
디자인 출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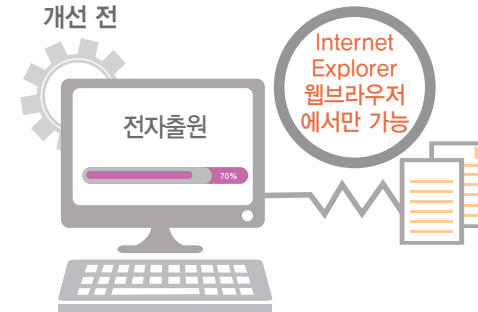
문 제 점

전자출원은 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고, PCT 국제특허
출원 시 별도의 SW를 설치해서 이용해야 함

– 전자출원 시스템의 웹 호환성이 낮고, 출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SW를 설치하는 등
신규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움

개선 내용

개선 전



- 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에서만 전자출원 가능
- PCT 국제특허출원 시 별도의 SW 설치 필요
- 특허 · 실용신안 출원만 상용워드 출원 가능

개선 후



- Chrome, Firefox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출원 가능
- 웹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ePCT 서비스 제공
- 상용워드 출원을 디자인까지 확대

기대 효과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고, PCT 및 디자인 출원 방식이 간편
해져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됨

- 변리사 A씨는 평소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유독 '특허로'는 Internet Explorer를 실행시킬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혼동이 있어왔다. 그런데 특허로에서 ActiveX를 제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원래 이용하던 Chrome을 이용하여 특허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이제야 Internet Explorer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PCT 출원을 위해 PCT-SAFE 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출원서를 작성해왔는데, 이전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ePCT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 디자이너인 B씨는 그동안 평소 생각하던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출원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출원 SW의 설치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출원할 수 없었다. 그런데 '17년 3월 상용워드 문서 출원이 디자인 출원까지 확대되면서 별도의 SW를 설치할 필요없이 평소에 쓰던 상용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전자출원하게 되었으며, 주변 디자이너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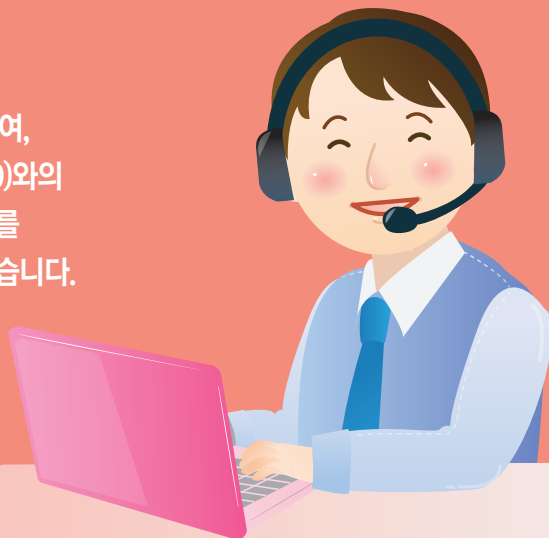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ARS 결제 서비스 제공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출원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습니다.
특허료를 통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17년 10월부터 신용카드
ARS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상담센터(1544-8080)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 존재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신용카드를 이용한 특허수수료 납부는 고객
지원실 방문 또는 특허료를 통해서만 가능

개선 후



- 특허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도중, 수수료를 신용카드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로 결제

기대 효과

- 특허고객의 수수료 납부방식 다변화로 결제편의 제고

지방에 거주하는 개인 발명가인 A씨는 신용카드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고 싶었으나, 이를 위해 서울 또는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에 방문하는 것은 거리상 어렵고, 인터넷 사용에 서툴러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특허 수수료 신용카드 ARS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특허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 출원 전 본인 공개에 따른 거절 부담 경감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제가 출원한 디자인이 이미 출원 전에
블로그에 공지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출원 후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2017. 9.22.) 후에
출원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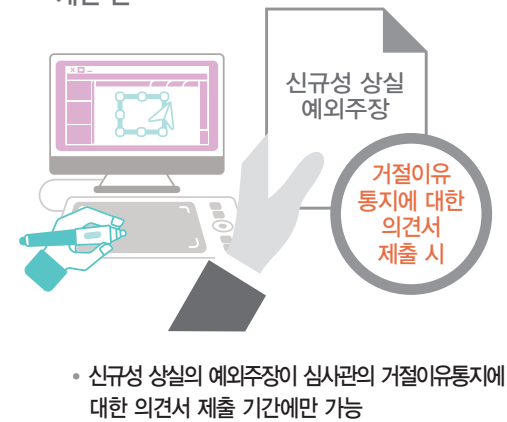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장할 수 없음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기대 효과

•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를 확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의 권리보호 및 편의 증진

A사는 제품을 디자인한 후 해당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지되어 신규성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A사는 해당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누락한 채로 출원하였다.

A사는 출원 후에야 이를 알고 예외주장을 하려고 했으나, 출원 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17. 9.22.)되어 법 개정 이후에 출원한 것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생략

특허청 등록과 (042-481-5233)

출원시 설정한 지분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데요.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시 지분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원 중에 설정한 지분의 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서 제출시
지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위한
납부서 제출 시 지분확인을 위한 지분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관련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서 제출 시 지분확인용 지분약정서 및 인감
증명서 제출 필수

개선 후



- 출원 중 설정한 지분의 변경이 없을 경우 납부서
제출 시 지분약정 절차(지분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기대 효과

- 등록관련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 편의 및 고객만족도 제고

A씨는 설정등록료 납부를 위해 특허청에 방문한 김에 해당 권리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관련 서류 (지분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해서 지분 약정을 할 수 없었다.

B씨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편리하게 은행에서 설정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출원중 설정된 지분을 등록하면서 재설정하기 위해 따로 납부서를 작성하고 지분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설정 등록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등록령 개정 이후에는 출원 중에 지분을 설정하고 그 지분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해당 지분 정보를 등록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등록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인의 편의가 한층 제고되었다.

IP 분쟁 조기해결을 위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기간 연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간을
한번 연장했는데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간 3개월이 경과되었어도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간 경과시 1개월 한번만 연장 가능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다루는 IP 분쟁 해결에 한계

관련규정

발명진흥법 제43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조정기간(3개월) 도과 시,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 연장 가능

개선 후



• 조정기간(3개월) 도과 시, 1개월 단위로 3회 이내
연장 가능

기대 효과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의 성립을 제고를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 및 그에 따른 당사자 간
소송비용 절감

상표권 침해를 발견한 상표권자 A씨(신청인)는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B씨(피신청인)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조정회의를 하면서 예정된 조정기한이 도래하게 되어 결국 조정이 불성립 되었다. 이렇게 기한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조정기간 3개월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조정의지만 있다면 분쟁 당사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청소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디자인도 새로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려고 하는데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을까요?



A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빠른 권리 확보에 한계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우선심사대상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개선 후



-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기대 효과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과 관련된 디자인 출원의 우선 심사로 출원인의 빠른
권리 확보 지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청소기 전문업체인 A사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빨리 받아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싶었으나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선심사를 통해서 디자인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개선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74)

이전에는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입체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해야지만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정상품을 ‘자동차’로 하여
‘사자모양의 입체적 형상’을 입체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만
등록받을 수 있음

관련규정

상표심사기준 제8부 제1장

개선 내용

개선 전



- 입체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함

개선 후



-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포장·용기 포함)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으며, 일반적이거나 흔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형상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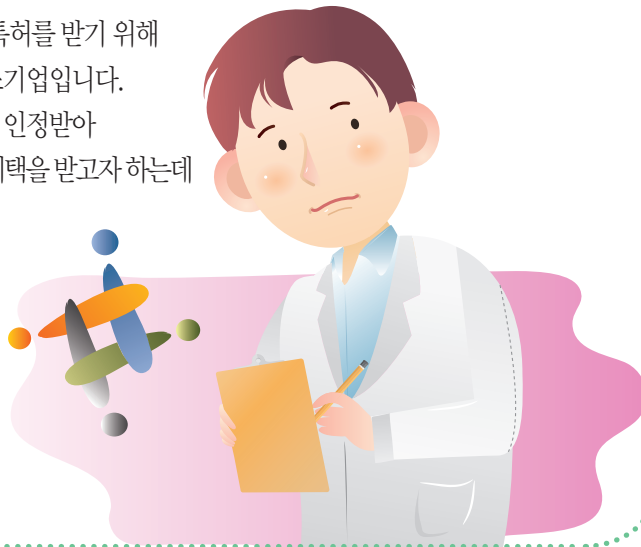
- 입체적 형상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출원인의 편의 제고

자동차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A씨는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착할 용 모양 입체적 형상을 디자인하고 상표로 사용하고자 상표출원을 하였는데, 이전 같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입증하라는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을 입증하지 않고도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0)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직무발명 인증평가 항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직무발명보상규정, 보상사실
증명 서류 등), 직무발명현황 파악을 위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전체 종업원의 설문조사표를
요구하여 기업의 업무 부담 가중

관련규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요구
-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받은 종업원의 설문조사표 제출 요구

개선 후



-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을 삭제
-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의 설문조사 표로 변경

기대 효과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대응 부담 감소로 인증제도 확산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정착에 기여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의 특허담당자 A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가점과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혜택을 받고자 했으나 신청 서류 중 보상금 수혜 종업원 전체의 설문조사표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업원 설문조사를 특허담당자 설문조사로 대체하여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신청부담이 크게 줄어 인증을 받게 되었다.

전산장애 발생 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특허넷 오류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가 납부 가산금이 붙거나
권리가 소멸되나요?



A 정보통신망 장애 또는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시 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명문 규정 부재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개선 내용

개선 전



• 명문 규정 없음

개선 후



• 전산장애로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납부기한이 도래

기대 효과

• 정보통신망 장애 시 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A씨는 연차등록료 납부 마감일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기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넷에 접속하였으나 특허넷
오류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 상실 또는 추가 납부 가산금 가산을 우려했으나,
납부 마감일이 조정됨에 따라 별도의 부담없이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심결문 발송 안내 메시지 서비스 제공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8444)

심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리사입니다.
심결문의 정확한 발송 시점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특허심판원은 올해 4월부터 심결문 발송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고 싶으시면, 먼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신 후, 우측 하단 고객센터의 편리한 서비스 중 알림서비스 신청에서 '통지서 발송내역 통지'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제 개요

문 제 점

심결문 · 결정문이 언제 발송되는지 정확한 시점을 몰라, 대리인 등이 수시로 특허로에 접속하여 확인해야하는 불편 초래

개선 내용

개선 전



- 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지서 발송시점을 안내 중이나,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안내를 하지 않아 안내효과가 미흡한 상황

개선 후



- 심결문 · 결정문이 발송되면,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대리인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

기대 효과

- 심판 대리인이 안내 메시지 수신 후 바로 심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 대리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고객 편의 제고

A 변리사는 다수의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각 사건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어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후 특허로에 수시로 접속하여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심지어 심판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당사자가 먼저 심결문을 확인한 후 대응방법을 물어오는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후, 심결문 발송시점과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서 특허로에 수시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심판결과를 빨리 알고 준비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2017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특허청
발행인 특허청장 성 윤 모
기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특허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